#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# 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작성부서 :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

작 성 일 : 2014. 12. 02 작 성 자 : 박지현

적 경 사 : 탁시면 전 화 : 02-3460-1136 연 락 처 : jhpark@kiep.go.kr

# I. 개 요

- 1. 일시: 2014. 11. 26. (15:00~17:00)
- 2. **장소**: 8층 회의실
- 3. 발표자: 김경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
- 4. 참석자

송주호(한국농촌경제연구원, 선임연구위원) 유춘권(농협경제연구소, 유통연구실장) 임정빈(서울대, 교수) 김경미(농림축산식품부, 농업통상과장) 서진교(KIEP, 무역통상실장) 엄준현(KIEP, 연구원) 이준원(KIEP, 연구원)

## 5. 제목

- DDA 농업협상 경과 및 향후 전망

# II. 주요 논의 사항

- 1) 발제내용
- I. DDA 전체 협상 경과
- □ (2001~2005)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각료회의에서 DDA 출범

을 선언하고 협상방식은 일괄타결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, 2004년 Framework 채택,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하여 협상 모멘텀 유지

- □ (2006~2010) 2006년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아 협상 중단 및 재개를 거쳐, 2007년 Falconer 의장이 모델리티 초안, 2008년 Rev2~Rev.4를 제시하였으나 타결실패, 2009년 이후 모델리티 잔여 쟁점 및 기술문제를 협상에도 불구, 합의에 실패하고 협상동력 상실
- □ (2011~현재) 2011년 각료회의에서 WTO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조기수확 방식 채택, 2013년 R. Azevedo 신임사무총장 취임후 강도 높은 협상을 거쳐 12월 발리각료회의 일부 이슈에서 조기 부분타결에 성공

#### Ⅱ. Post-Bali 농업부문 협상 동향

- 1. 발리 패키지 이행
- □ 발리 패키지 이행사항으로는 무역원활화 부문에서의 개정의정서 채택, 식량안보 부분에서의 영구적 해결방안 마련(MC11 이전), TRQ 부분의 미소진 메커니즘 세부운영방안 검토 등이 논의
- □ WTO 일반이사회('14.7.31)에서 무역원활화 개정의정서 채택 실패
- □ 일반이사회('14.10.21)에서 WTO 사무총장은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등의 논의를 위해 10.31 비공식 대사급 회의 개최 언급
- □ 비공식 대사급회의('14.10.31)에서 사무총장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타결 가능성을 평가
- □ 미국과 인도는 USTR 및 인도 상공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무역 원활화협정(TFA) 이행과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관한 합의 사실 발표('14.11.13)

- 무역원활화 협정은 조건 없이(without conditions)이행하고,
- 식량안보 공공비축과 관련해서는 영구해법이 합의되어 채택될
  (agreed and adopted)때까지 지속됨을 확인하고, 집중적인 작업계획 및 협상에 관한 요소에 대하여 합의
- □ 특별 일반이사회를 개최하여 식량안보 관련 결정 및 TFA 의정서 채택 추진('14.11.25~11.27 예정)

## 2. 주요 쟁점

- □ TFA의 내용적 측면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, 다만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비축의 영구해결방안에 관한 이견 존재
- □ 인도는 7.25에 진행된 일반이사회에서 당초 무역원활화 협정과 식량 안보 영구해법이 연말까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.
- 이후, 한발 물러나 영구적 평화조항을 WTO 일반이사회 결정 (decision)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장
- 이에 대하여 미국은 영구적 평화조항을 일반이사회 결정이 아닌 WTO TNC 의장의 해석(interpretation)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 것 으로 알려짐.
- □ 인도와 미국을 제외한 WTO 회원국들 중 일부 선진국들은 TFA의 복수국간 이행 후 이행 가능한 여타 발리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이행하자고 주장
- 3. Post-bali work program
- 가. 주요 협상 동향

- □ MC9 이후 케언즈 그룹은 국내보조, 수출경쟁, 시장접근 분야로 구분하여 그룹 내 논의를 지속. G33은 이에 대응하여 특별품목 (SP), 특별긴급관세(SSM), 식량안보 공공비축 등 3개 이슈 집중 검토
- □ '14.6.24 G33은 핵심 이슈인 특별품목(SP), 특별긴급관세(SSM), 식량안보 공공비축 등 3개 이슈의 G33 제안서를 G33 전체 회원국 에게 회람

## 나. 주요 쟁점

- □ Post-발리 워크프로그램에서의 Rev.4의 지위
- '08년 Rev.4 이후, 전임 농업의장 제시 10대 잔여쟁점 위주로 논의 하였으나, 협상 타결에는 실패
- MC9 이후, Rev.4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'08년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Rev.4를 re-open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.
- G33등 수입국들은 기존의 협상 성과인 Rev.4를 기반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임.
- □ 시장접근 이슈(수출국들) vs 특별품목, 특별긴급관세, 식량안보 목 적의 공공비축(G33)
- 수출국들(케언즈 그룹)은 DDA 워크프로그램 논의에 대비하여 그룹 내 국내보조, 시장접근, 수출경쟁 등 3개 분야 소그룹을 운영하여 내부적 검토 진행 중
- □ 협상타결방식 : 일괄타결방식 vs 부분타결방식
- 수출국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접근 분야의 조기 타결을 위한 부분타결

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.

- G33 등 개도국 그룹들은 협상타결방식에서 전체 협상 균형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으로, 부분타결방식보다는 일괄타결방식을 선호

### Ⅲ. Post-Bali 농업부문 협상 방향

- 1. 발리 패키지 이행
- □ 무역원활화협정과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간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협상 모멘텀 확보
- □ 여타 농업부문 발리 패키지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동의 하는 입장이나, 향후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논의 과정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
- 특히,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영구해법 관련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활용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필요
- 2. Post-발리 워크 프로그램
- □ 선진국과 개도국간 Rev.4의 지위 관련 대립이 첨예한 현 상황을 고려 할 때. Rev.4가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임.
-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Rev.4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력을 유지하되.
- Rev.4 재논의에 대비한 주요 이슈 재점검 필요(관세상한, SP, SSM, 국내보조 관련 이슈 등)
- 특히,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서는, 철저한 대응 논리 개발 및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취약성에 대한 WTO 회원국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

## 2) 토론 내용

2014년	상반기	중 Az	evedo	WTO	사무총	장 및	협상그	룹 의장-	을 중
심으로	회원국들	들간 Po	st-Ba	il 작업	계획에	대해	활발한	논의를	전개
해 왔으	나 현재	가시조	보인 진	전은 년	쿠족하 /	상황임			

- 금년 상반기 중 농업/NAMA/서비스 분야에서 협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다른 협상 분야는 협상그룹별 의장이 회원국들간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의되었음.
- □ 전체 작업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농업과 NAMA 부문에서 가장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. 작업프로그램 관련 주요국 및 그룹별 입장은.
- 미국의 경우, 주요 개도국 국내보조 문제, 최근 통보 등을 통한 교 역상황 반영
- EU는 시장접근(관세감축) 단순화 및 허용보조 변동 불가
- 일본은 수출제한 이슈 및 교역상황 파악을 위한 최근 통보 보완
- G33은 SSM 보완필요, SP 안정화, 식량안보 공공비축 영구해법 논 의 촉구 등을 강조함.
- 특히 EU의 시장접근 분야 단순화 접근, G33의 SSM 수정텍스트 제 안, SP 안정화 제안 등이 제시되면 향후 작업 프로그램 논의가 본 격화될 것으로 사료됨.
- □ 인도는 식량안보 공공비축 영구 해법 마련시까지는 2017년이 넘어 가더라도 평화조항이 적용된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으나, 우회방지/세이프가드 및 식량안보 공공비축 프로그램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추가협상이 필요함.

- □ DDA협상이 부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, 선진국 과 개도국이 상호 서로를 불신하면서 주요 쟁점마다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협상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.
- 따라서 DDA협상을 타결하고, WTO중심의 다자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인 방안이 될 것임.
- 인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바, DDA 진전을 희망하는 국가들
  의 노력이 필요하며, 회원국간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.
- □ 최대한 많은 회원국들에게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. Post-Bail 작업계획 논의는 어려울 것인 바, WTO 협상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.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, 기술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다 같이 중요함.
- □ 다자통상체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. 무역원활화 이행 관련 법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□ 무역원활화 이외의 발리패키지 이슈에 대한 논의가 뒤처져 있음. 무역원활화는 단지 하나의 합의이며, 발리패키지는 LDC 이슈를 포 함한 여러 이슈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.
- □ 향후 협상 분야간 이해 균형을 위한 협상이 전개되면서, 협상분야 내 뿐만 아니라 협상 분야간에도 '주고받기식' 협상이 전개될 것으 로 전망
- □ 한편 DDA협상 논의의 기초로서 2008년 의장 4차 수정안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, 지금까지의 논의동 향으로 볼 때 어떠한 형식으로든 의장 4차 수정안의 변경은 불가피 할 전망임.

- 특히 2014년 3월 케언즈그룹이 국내농업보조 동향자료를 배포하면 서 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자, 선진국들은 농업보조나 관세에 관해 새롭게 갱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결국 이러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장 4차 수 정안의 일정 부분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